

『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6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6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6월 17일

제1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지방세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안 제2조)
-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(안 제3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법」 제56조
- 경상북도 세정과-3775(2010. 3. 16)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 (행정안전부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세법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
-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%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 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 없으며,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